



# 대구·경북 인권보장체계 구축 워크숍

일 시 2022. 6. 29.(수) 13:30~16:30

장 소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교육센터



# 대구·경북 인권보장체계 구축 워크숍

일 시 2022. 6. 29.(수) 13:30~16:30

장 소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교육센터



# 대구·경북 인권보장체계 구축 워크숍

- 일시 : 2022. 6. 29.(수) 13:30~16:3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교육센터
- 내용 : 대구·경북 지역인권 보장체계 현주소 및 내실화 방안 논의
- 사회 :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 참석

구분	이름/소속
지방의회 (2명)	김동식(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임미애(경상북도의회 의원)
인권시민단체 (5명)	서창호(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김승무(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 김용식(경북노동인권센터 센터장), 이용기(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소장) 김형완(인권정책연구소 소장)
광역지자체 인권증진위 (5명)	이재석(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장), 남은주(부위원장), 조용섭(위원) 이용근(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장), 강은영(위원)
광역지자체 (2명)	정해순(대구광역시 인권팀장), 박도현(경상북도 인권팀장)
국가인권위 (4명)	조형석(인권정책과장), 손두진(대구인권사무소장) 문진경(인권정책과), 김화숙(대구인권사무소)

# 목 차

## [발표자료]

지자체인권제도, 주요 쟁점과 발전방안 모색 .....	7
김형완((사)인권정책연구소 소장)	
대구시 인권제도 현황 .....	26
경상북도 인권보장체계 .....	39
지역인권보장체계 수립, 총체적 반성과 성찰의 토대에서 출발하자 .....	46
서창호(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 [참조자료]

인권보장체계 구축 워크숍 주요 논의사항 .....	59
광역시자체 인권기본조례 .....	62
대구·경북 인권관련 자치법규 목록.....	71
인권정책기본법안 .....	73

## 발표자료

1. 지자체인권제도, 주요 쟁점과 발전 방안 모색
2. 대구시 인권제도 현황
3. 경상북도 인권보장체계
4. 지역인권보장체계 수립, 총체적 반성과 성찰의 토대에서 출발하자



# 지자체인권제도, 주요 쟁점과 발전방안 모색

김형완((사)인권정책연구소 소장)

# 지자체인권제도, 주요 쟁점과 발전방안 모색

(사)인권정책연구소 소장 김형완



## 지방정부 인권행정의 수립, 운용의 근거와 당위성-국제적배경

- 1993년 비엔나세계인권대회(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1993)에서 확인된 비엔나선언과 실행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 of Action) 권고와 2001년 5월 21일 유엔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의 권고에 의해 각 나라는 인권전담 국내기구설치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을 마련해야 함.
- 이는 인권의 실현을 위해 유엔 등 국제적 규범과 제도에만 의존하는 것이 명백히 한계를 가지는 만큼, 개별 국가별로 국내 인권전담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인권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임(일국 시민권->제국주의적 팽창과 양차대전->유엔의 창설->국제인권조약 등 글로벌 메카니즘의 마련->국가별 인권전담 메카니즘->지역별 인권메카니즘. Glocalism=Global+Localism).
- 제24차 유엔인권이사회(2013.9.)의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안 채택에 이어 제27차 유엔인권이사회(2014.9.)에서 결의안에 대한 중간보고서 채택(광주와 서울 참여)에 따라 지자체 단위의 인권정책이 유엔에서 의제화 되기 시작함.

## 지방정부 인권행정의 수립, 운용의 근거와 당위성-국내적배경 1(헌법과 법률)

- 헌법 제6조 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37조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헌법 제11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28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정부 인권레짐의 창설과 운용 그 근거와 당위성-국내적 배경2(대구인권조례1)

- 제3조(시장의 책무)
  -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5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소관 부서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지방정부 인권레짐의 창설과 운용 그 근거와 당위성-국내적 배경2(대구인권조례2)

- 제6조(인권교육)
  -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 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시행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 제6조의2(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등)
  -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지방정부 인권레짐의 창설과 운용 그 근거와 당위성-국내적 배경2(대구인권조례3)

- 제7조의2(인권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소결

- 따라서 지자체가 인권제도를 창설, 운영하는 것은 지자체장의 임의적 재량행위라기 보다 대한민국이 비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 및 헌법과 지방자치법, 관련 조례에 의해 수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전국 각 지자체에 인권표준조례안을 제시한 바 있음.

##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에 따른 변화

- 현재 NAP는 대통령훈령 제383호 국가인권정책협의회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바, 법률로써 그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성과 규범력, 실행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현재 NAP의 구성, 수립시 의견 수렴절차. 연도별 시행계획수립, 수립대상, 이행실적 점검 등 추진체계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중앙정부와 지자체(교육청 포함)가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거나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유엔의 인권관련 각 조약기구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 작성과 심의절차를 규정하고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반영할 절차를 규정함.
- 지자체 인권규범과 제도, 정책 등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인권전담부서와 인권기구 분별)

## 인권정책기본법안의 주요내용

- 대통령 소속 ‘국가인권정책협의회’(위원장 국무총리)를 30인이내 민관으로 구성되는 심의조정기구를 설치하고 그 하부에 실무를 맡을 ‘국가인권정책집행위원회’(위원장은 법무부장관)를 구성
- 지자체 인권부서(기구) 설치 근거 규정확보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 지자체에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 지자체의 장은 NAP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
- 집행위가 연도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개선권고 및 결과 통보

## 인권정책기본법안의 주요내용

- 5년마다 인권실태조사 실시
- 국가보고서 작성절차를 규정하고 심의종료 후 6개월 내 위원회에 심의결과 및 후속조치 제출
- 국가와 지자체의 국제인권기구 권고이행 의무
- 기업과 인권(인권경영)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의무(조례)
- 인권교육 실시 근거 규정(조례)
- 인권단체 지원 규정 마련(조례)

## 파리원칙(Paris Principles)

1991년 파리에서 제정된 1993년 12월 UN 총회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에 관한 보편적인 기본준칙

파리원칙에서 국가인권기구란 형식상 각국의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를 두고 설립되어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특정한 전문적 기능(인권에 관한 법제도와 정부의 정책에 관한 자문 기능,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교육기능,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입법적인 것도 사법적인 것도 아니라는 의미에서 행정적인 성격을 가지나 정책결정권과 집행권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행정기관과도 구별된다고 하였다.

국가인권기구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이루어진 기존의 삼권분립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새로운 개념'의 국가기구이다. 파리원칙에서는 헌법이나 법률에 보장된 독립성, 정부로부터의 자율성, 구성의 다원성, 광범위한 직무, 충분한 조사권한 및 재원 등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자격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1. 독립성 :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원을 임명하는 과정은 인권단체, 사회단체, 종교단체, 대학교수 및 국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세력, 특히 '기층의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 충분한 재정을 확보해야 하며 정부로부터 재정상 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독립성 확보와 안정적 권한 수행을 위해 구성원의 직무수행 기간이 명확히 보장돼야 한다.

## 파리원칙(Paris Principles)

2. 준사법적 권한: 국가인권기구는 개별상황에 관한 고발과 청원을 조사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해 우호적 해결을 모색하고 청원자가 유리한 구제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고발 및 청원을 직접 조사하거나 적절한 다른 기관에 이송하며, 관련된 법률, 법규정, 행정관행의 개선을 권할 있는 기관에 제안한다.
3. 운영방식: 국가인권기구는 자유로운 심사, 증언 청취, 정보나 문서 입수, 여론에의 호소, 다른 기관과의 협의, 실무그룹 및 지방조직 구성 등이 가능해야한다. 인권보장과 증진, 경제적·사회적 발전, 인종주의에 맞선 투쟁, 특히 취약 집단인 아동과 이주노동자, 난민, 신체적·정신적 장애인, 또한 특정 영역 등에 기여해 온 비정부 기구와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4. 권한과 의무: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가능한 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하며, 헌법 또는 법률에 그 구성과 권한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야한다.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의 보호 및 향상을 위한 자문, 인권을 위한 교육과 홍보, 국제협력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 인권기구의 독립성

*“인권기구는 체제가 도저히 환영할 수 없는 뜻밖의 것임이 판명되었다.*

*인권기구의 본질로 인하여 어떤 권력에겐든지*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는 인권기구는 불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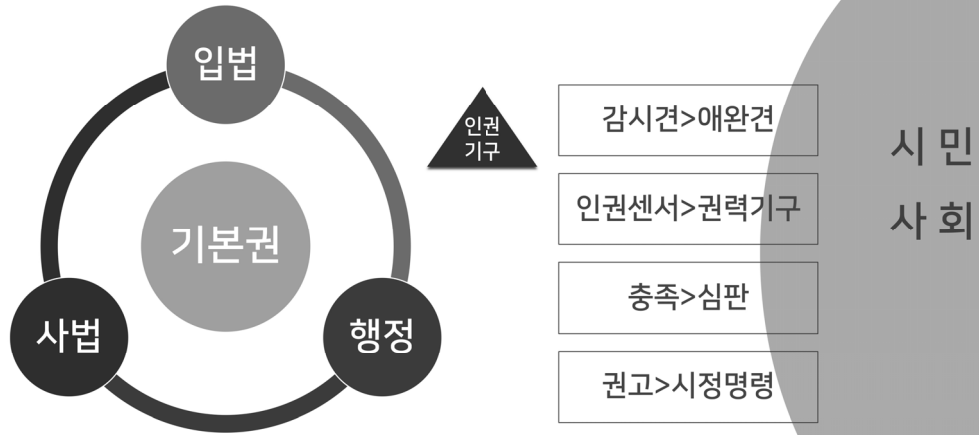
-에바 레토브스카(Ewa Letowska 폴란드 초대 인권옹호부 장관)

*“이 보고서는 정부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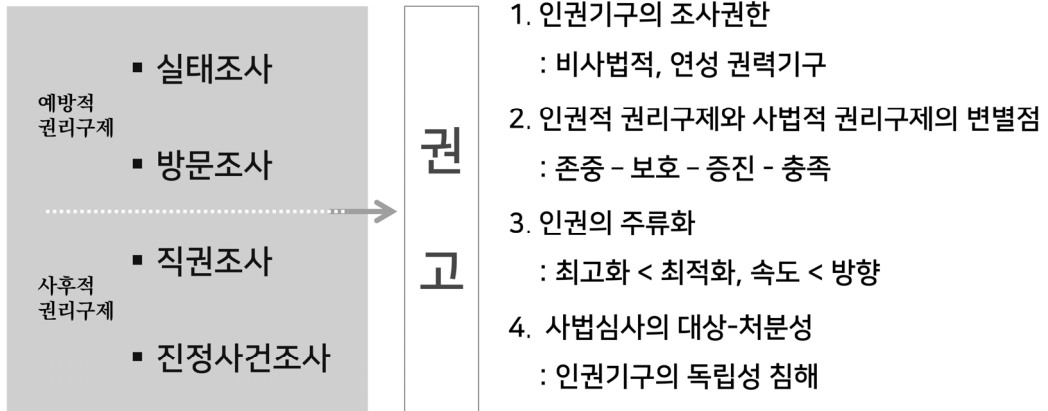
*“This is the report that the government did not want”*

- 뉴질랜드 인권위원회 ‘Consistency 2000’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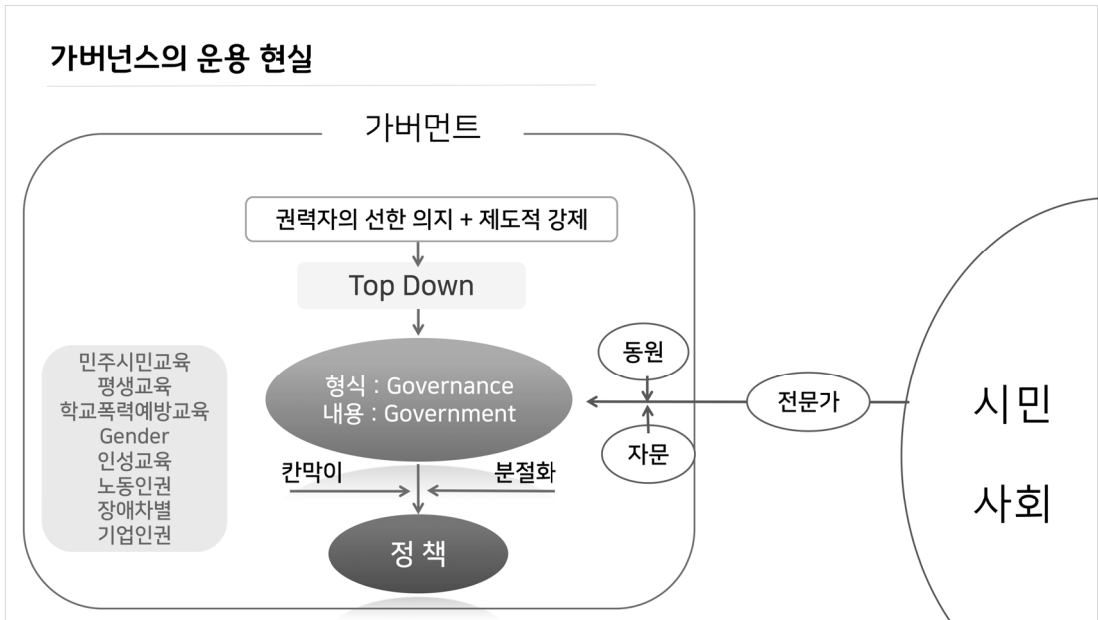
## 인권기구와 사법기구의 변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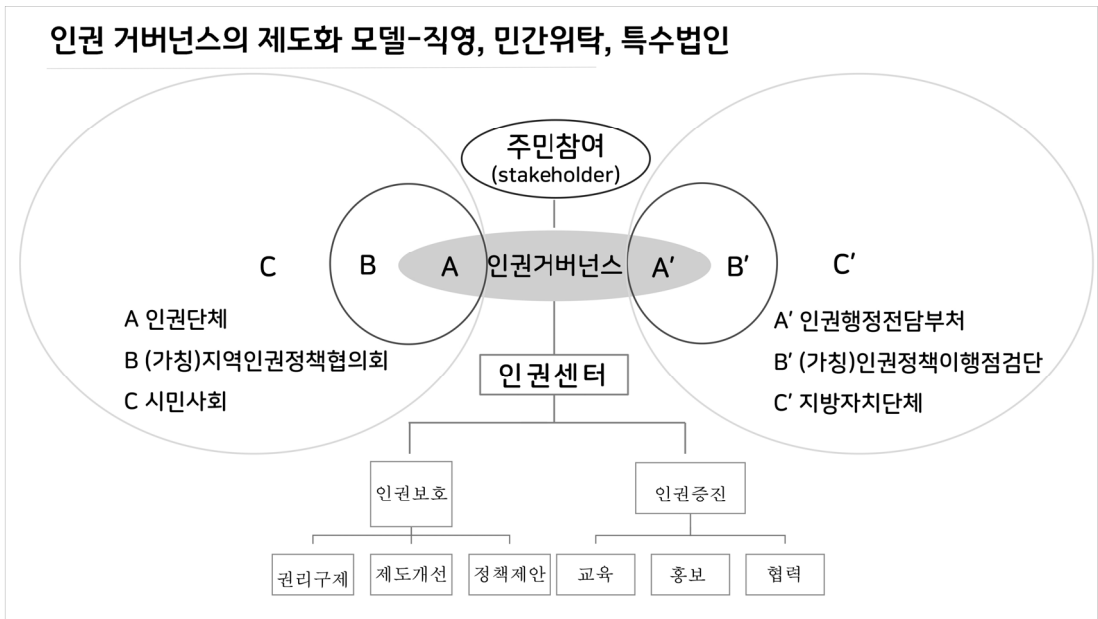
## 인권기구의 조사의 종류와 권능



### 가버넌스의 운용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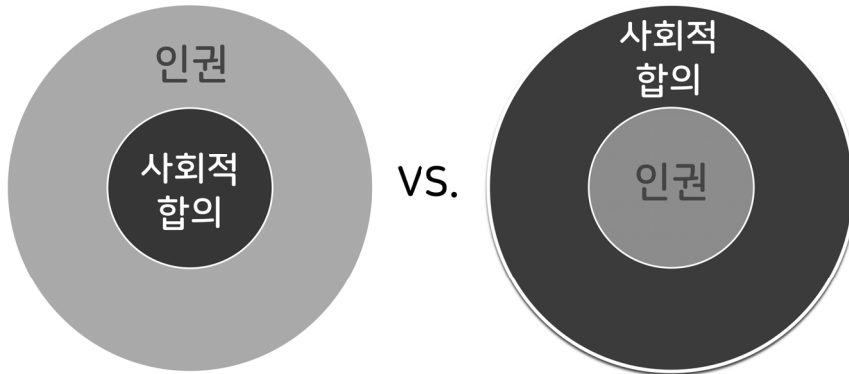


### 인권 거버넌스의 제도화 모델-직영, 민간위탁, 특수법인





## 인권과 사회적 합의



*“민감한 인권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기다릴 수 없다.*

*인권은 여론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2015. 11.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UN 자유권위원회 심의중 Nigel Rodley 위원〉

## ‘자문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지방자치법 제130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자문기관의 설치·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동법시행령 제78조**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동법시행령 제80조(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 자문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지방자치법 제129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동법시행령 제77조**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9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1.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
- 2.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 3.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지자체인권행정발전방향모색

- 1) 인권에 기반한 행정이란, 지자체가 이제까지 해왔던 기존 업무에 부가하여 새로이 ‘인권’이라는 행정업무를 추가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다. 행정이 법에 근거한 것이고, 모든 실정법은 헌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행정은 원래 시(도)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많은 지자체 공무원이나 관계자들이 인권업무를 기존 업무에 추가되는 ‘별도의 업무’로 여기는 잘못된 경향이 있다.
- 2) 인권기구를 만드는 이유와 그 사명에 대해 다시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권기구를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행정청으로부터 독립하여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행정청이 인권에 기반한 행정을 제대로 시행하는지 모니터링하면서 부족한 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충고, 조언, 지적하고 시정 조치하도록 권고하는데 있는 것이지, 인권행정 담당부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행정청 내부의 인권 행정 담당부서와 행정청 외부의 인권기구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인권행정을 ‘집행하는 단위’와 이를 ‘모니터링하고 조언하는 단위’는 다른 것이다. 지자체의 인권센터는 인권행정 담당부서인지, 아니면 인권기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 행정청 소속의 당연직 위원은 인권위에 옵서버(또는 간사)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인권행정 담당부서는 행정청 내 ‘인권정책협의회’, 또는 ‘인권정책이행점검회의’를 주관토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인권행정 담당부서는 행정청 내에서 집행기구가 아닌 기획조정기구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는 사실상의 인권영향평가체계를 도입하는 효과를 유인할 수 있다.

## 지자체인권행정발전방향모색

- 3) 인권기구의 조사권한을 둘러싼 논란이다. 본디 인권기구는 권고기구로서 행정명령 등의 강제력을 수반하거나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다. 권고는 그저 권고일 뿐, 피권고 기관 또는 피권고인이 얼마든지 불수용할 수 있는 것이고, 불수용 했다 해서 법적 불이익이나 처벌이 동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권기구의 조사권이 피조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다.** 인권기구의 조사가 권고로 수렴되고 사법경찰관리의 행정지도, 감독이 아닌 이상 인권기구가 인권실태와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권능을 갖는 것은 현행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 특히 **인권기구의 조사권능은 사법경찰기구, 또는 강제력을 갖는 행정청의 기존 조사와 달리 진정/피진정 양당사자에 대한 인권적 기술지원을 목적으로 이뤄진다. 제한적으로 사후적 권리구제권능을 가질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긴급한 사안이거나 기존 사법절차의 보충적 차원에서 이뤄지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예방적 권리구제라는 자기 정체성에 부합하여야 한다.**
- 4) **인권기구의 상위법적 근거는 헌법이다.** 인권기구는 말 그대로 시(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하는 것이지 기본권을 제약하는 게 아니다. 따라서 헌법 제 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반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도록 한 헌법상의 국가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장 헌법적인 정당성을 가진 기구가 인권기구인 것이다. 더구나 인권기구의 권능작용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있어 법률유보원칙(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 헌법은 제37조에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으므로 **인권기구는 가장 헌법적인 기구이자 헌법정신을 직접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기구로서 그 정당성을 갖는다.**

## 지자체인권행정발전방향모색

5) 인권기구는 인권보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구이다. 인권보장이란, 인권침해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응징하는 형사사법적 접근을 통해서가 아니라, 첫째 “**폭정과 억압**”으로 부터의 법의 지배에 의한 자유의 보호와 차별의 해소를 예방적으로 도모하는 역할 (제한적 보충적으로 사후적 권리구제-권고기구)를 중심으로 한 인권보호 활동, 둘째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예방조치와 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권교육, 정책과 제도의 개선, 홍보, 협력 등의 인권증진 활동, 마지막으로 그러한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박탈과 결핍의 해소(=충족)를 위한 활동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것이 인권기구의 기본사명이 되어야 한다. 이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에 부여된 모든 행정에 해당된다.

6) 인권레짐은 원칙적으로 규범, 제도, 정책이 ‘**성삼위일체**’처럼 하나의 유기적 실체로 구성되어 마련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규범만 마련하고 제도와 정책을 소홀히 한다든지, 규범과 제도는 마련했으나 정책을 소홀히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인권레짐의 실효성이나 효과성을 크게 훼손한다. 적지 않은 지자체에서 이같은 유기적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태이다. 더구나 규범이든, 제도든, 정책이든, 각각을 창설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데에는 반드시 실태조사와 인권교육과 주민참여의 세 가지 축이 함께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실태조사가 생략 되면 각 지자체별 특수성이 간과되고, 인권교육을 소홀히 하면 아무리 실태조사를 한들 허수만 잡힐 뿐이며, 또한 이러한 전 과정에 주민참여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주)민의 역량강화가 요원해져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

## 지자체인권행정발전방향모색

- 7) 규범은 제도 설계의 근거가 되며, 제도는 인권정책의 추진체계가 된다. 규범, 제도, 정책의 설계는 각 지자체의 콘텍스트(규범, 공무원 및 의회, 시민역량의 수준과 지자체의 지정학적 특성, 단체장의 의지, 기존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최고화'가 아닌 '최적화'를, 속도보다는 방향을, 결과보다는 과정과 절차를 중시하여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지자체 인권기구가 행정청에 대한 자문역할에 중심할 필요가 있다면 인권기구는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구성하여 정책추진에 있어서 발생하는 갈등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단체장과 의회에 대한 '영향의 정치'를 중심으로 메인스트리밍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인권기구의 창설 목적이 지자체 행정 전반에 대하여 인권적 모니터링에 충실하려면 인권기구는 '워치독(WATCH DOG)'의 위상을 확보하고 독립적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독임제형(옴부즈만)과 합의제형(위원회)을 굳이 동시에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만일 동시구성을 꾀한다면 두 기구간의 유기적 관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실정상 독임제형보다는 합의제형이 더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사실 인권기구를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지에 관해서는 정형화 된 모델이란 없다. 특히나 인권옴부즈만과 같은 독임제 기구와 인권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기구가 점차 그 형태와 무관하게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요즘의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옴부즈만 중심의 독임형 기구는 제도와 사람에 대한 권위와 신뢰가 일정 정도 확보된 토대 위에서나 실효적인 기능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규범에 대한 시민적 동의나 합의의 수준이 높을수록 옴부즈만의 활동이 효과적으로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개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 수준이 높은 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제도와 규범에 대한 시민적 신뢰수준이 높다.** 이런 조건에서 옴부즈만은 자기책임 아래 단독적인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결정에 불복하거나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민주적 권력통제(법치주의 실현)의 정도나 법규범에 대한 신뢰수준, 인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두루 감안할 때 독임제보다는 합의제형 인권기구가 상대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옴부즈만과 인권위를 양측으로 해서 복수의 중층적 인권보장기구를 동시에 가동하는 것이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예산과 인력이라는 가용자원의 한계가 상수로 작용하고 있는 마당에 과연 두 기구를 동시에 운용하는 것이 최선일 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문제는 백화점식으로 창구를 많이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라 있는 제도라도 제대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지자체인권행정발전방향모색

이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인권기구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governance 지향이나 watch dog 지향이나를 가름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지방행정에 대한 협력적 충고와 자문, 이해관계의 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 가버넌스를 인권기구의 기본적 위상으로 상정한다면 기존과 같은 행정청에 대한 자문기구로서도 얼마든지 그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이럴 때 인권기구는 말 그대로 가버넌스에 합당하도록 사회적 다양성, 즉 이해관계자(Stakeholder)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행정청에 대한 인권적 감시기능, 즉 모니터링기구로서 인권기구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다양한 인권분야를 대표하면서 그에 따른 전문역량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법치주의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우리는 아직 법규범과 제도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건 공통적으로 행정청에 대한 시민권적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지금은 우리에게 적합한 인권기구가 Watch Dog으로서의 사명이 아닐까 싶다.

8) **현행 지방자치법 제 129조(합의제행정기관)의 적극적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지자체 인권기구가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단순 자문기구로 설치되다 보니 그 권한이나 위상, 역할 수행에 있어 수많은 난맥에 봉착하고 있다. 인권기구란, 본디 “고도의 전문지식”(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7조 1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동조 2호)하고, 아울러 “주민의 의사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제3호)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7조는 지방자치법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에 근거한 것으로, 그 설치근거를 확보한 규정이다. 지방자치법 제129조는 지자체가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면서, 그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기구야말로 “독립하여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방자치법 129조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굳이 130조를 근거로 인권기구를 단지 자문기구로서 묶어두고 있는 현실은 아직도 행정편의, 관료중심적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소치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 지자체인권행정발전방향모색

- 9) 지역인권레짐은 매우 전략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예컨대 시민 주체들의 역량과 동원 가능한 자원의 수준, 그리고 이런 요인들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의 수준(=헤게모니) 등을 두루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권의 실현은 일방적인 정당성의 주창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더더군다나 그 정당성이란, 주체가 소외된 채 외부의 계몽과 강제로 구현되어본들, 그것은 일시적일 수는 있어도 결코 지속가능할 수가 없다. '주체 (=시민, 또는 주민)의 자력화'야말로 인권을 스스로 구현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지역, 도시공간에서 인권중심의 가치공동체를 시민 스스로 구현하는데 행정청이 그 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것인데, 촉진자는 '심판자'가 아니므로 합의, 조정, 알선, 중재, 비공식해결 등과 같은 대안적 갈등 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등 비사법적 권리구제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옹호자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인권감수성이나 전문성을 뛰어 넘는 고도의 인권정치의 역량이 요구됨은 물론이다. '인권의 정치'란, 한마디로 '최고화'가 아니라 '최적화'를 실현하는 것이며,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백화점식, 인권의제 망라식, 이벤트성 행사 중심의 접근을 지양하고 대상별, 영역별 선택과 집중 필요하며, 특히 인권의 주류화를 위해 대(지방)의회, 도(시)행정청 공무원 설득 및 역량증진전략, 여론형성 및 홍보전략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 10) 지자체인권기구 간 연대와 협력체계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역, 도시간 각 인권기구의 위상과 역할, 권능의 차이가 있고, 인권관련 인프라의 차이뿐만 아니라 자원동원의 한계도 있는 만큼 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가칭)전국지자체인권기구협의회와 같은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광역/기초** 단위는 물론 합의제와 독임제를 굳이 구분할 필요 없이 연대의 폭을 가급적 확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지역간 차등을 해소하고 수평적 연대에 의한 지역인권역량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동시에 국가인권기구의 '유고상황'으로 인한 국내적 인권보장체제의 무력화를 이중 삼중으로 두텁게 대체하는 효과도 있다. 이를 기반으로 UPR메카니즘의 국내운동 또는 국제적 인권도시 협의체와 같은 네트워크로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고 본다.



# 지자체인권행정발전방향모색-검토1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 구성)

-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 지자체인권행정발전방향모색-검토2

## 지방자치법 상 특별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 제199조(설치)

-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구성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규약에 대하여 승인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③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④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이 필요할 때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무의 위임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이 포함된 규약에 대하여 승인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⑥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규약의 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일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지자체인권행정발전방향모색-검토3

### **지방자치법 제193조(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외교·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교류 협력, 통상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를 포함한 정부 간 기구,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 간 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94조(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 설립·유치 또는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제기구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운영비용 등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95조(해외사무소 설치·운영)**

-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 협력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사무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 대구시 인권제도 현황

## 1 대구 인권실태조사 및 제2차 인권보장증진 기본계획 수립

### □ 추진배경

-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5년 주기로 시민의 인권 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 ‘제1차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 2022년에 종료됨에 따라 ‘사람 중심, 인권 도시 대구’를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제2차 기본계획 필요

〈 제1차(‘18~’22년) 기본계획 비전과 목표 (4개 분야 /19개 과제 /76개 세부사업) 〉

비 전	인권을 실현하는 시민행복도시 대구
정책목표	인권과 함께 실천하는 공동체 구현
추진전략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 (11개 이행과제, 40개 세부사업)
	인권존중 지역문화 확산 (2개 이행과제, 8개 세부사업)
	인권도시 환경조성 (3개 이행과제, 16개 세부사업)
	인권보장 및 증진 체계 구축 (3개 이행과제, 12개 세부사업)

### □ 사업개요

- 용역기간/예산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70백만원
- 용역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내용

- (인권실태조사) 시민, 공무원, 인권취약계층, 전문가 대상
-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제1차 기본계획 점검평가, 국내외 인권 현황 및 정책 검토, 향후 5개년 비전, 목표, 추진과제, 자원조달방안 수립 등

## □ 추진경과

- 입찰공고 : 5. 30.(금) ~ 6. 10.(금) \* 입찰자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단독입찰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6. 15.(수)

## □ 향후계획

-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추진사항 보고 및 의견수렴(6.28. 회의 예정)
  -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용역수행에 반영함으로써 용역의 전문성 및 완성도 제고
- 협상 및 계약체결(~7.7.(목))
- 자문가 회의(3회 이상) 및 수시보고
- 착수보고(7월), 중간보고(9월), 최종보고 및 용역완료(12월)

# 2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운영

## □ 위원회 개요

- 근 거 :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제8조
- 구 성 : 15명(위촉직 12, 당연직 3)
  - ※ 당연직 : 자치행정국장, 복지국장, 여성청소년교육국장
- 기 능 :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 심의, 실천과제 발굴 등
- 임 기 : 2년(한 차례만 연임 가능)
  - 제1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17. 7. 27. ~ ' 19. 7. 26. / 15명)

- 제2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18. 8. 28. ~ ' 21. 8. 27. / 13명)
- 제3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21. 9. 8. ~ ' 23. 9. 7. / 15명)

## □ 추진실적

-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
  - 기간 / 방법 : '22.3.17. ~ 3.25. / 서면심의
  - 안건 : 22년 대구시 인권보장 및 증진 시행계획(안) 심의 / ※위원 15명중 14명 찬성 가결
-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
  - 일시 / 방법 / 안건 : '22.6.28. / 대면 / 제2차 기본계획에 대한 위원회 의견 수렴

## □ 향후계획

- 제2차('23.~'27년) 대구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안) 자문 및 심의 : '22.6.~12월

<b>참고 1</b>	<b>제3기 대구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 명단</b>
-------------	-----------------------------------

구 분	성 명	소속직위	비고
위원장	이재석	대구대학교 법학과 교수	
부위원장	남은주	대구여성회 상임대표	여
위원	조용섭	수성대학교 교수	
"	박정호	변호사	
"	박찬걸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김승무	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	
"	고명숙	이주와 가치 대표	여
"	이정미	(사)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표	여
"	임지영	경북대학교 아동학부 교수	여
"	전경원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	
"	이영애	대구광역시의회 시의원	여
"	권오상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국장	당연직
"	정한교	대구광역시 복지국장	당연직
"	조윤자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국장	당연직

### 3 공무원 및 시민 인권 교육 운영

#### □ 추진방향

- 공무원, 시민 등 맞춤형 인권 교육 실시로 인권 존중 문화 확산
- 내실 있는 인권교육 추진으로 인권 도시 대구 만들기 시민공감대 조성

#### □ 사업개요

- 교육기간 : 연 중 ※ 교육시간은 1회당 2시간 소요
- 교육대상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기관단체(민간단체 포함), 인권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거주자 등
- 교육내용 : 인권의 이해, 차별 및 혐오 예방, 인권감수성 증진 등

#### □ 2021년 추진실적(10회 / 1,086명)

- 공무원 인권교육(연1회 의무) : '21.10.28.(목) 오전·오후 / 245명 / 비대면  
 ※ 공무원교육원 인권교육 별도 시행 : 집합교육 2회 57명, 사이버교육 510명
-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 인권교육 : '21.4. ~ 12월 / 대구문화재단외 5개 기관 / 6회, 209명
- 시민 인권특강 : '21.12.6.(월) ~ 7.(화) / 대면 37명, 비대면 595명

#### □ 향후계획(연 44회, 1,630명 정도)

- 공무원 인권교육(연1회 의무) : 상·하반기 각 1회 600명 정도
  - 일시 / 방법 : 6. 27(월) 오전 10시·오후 2시 각 1회 / 비대면 실시간 영상교육
  - 주제 / 강사 : 공무원이 가야할 길, 인권에 길을 묻다 / 이용근 해오름인권발전소 소장
- 기관·단체, 시민 대상 찾아가는 인권교육 : 연 42회, 1,030명 정도

연번	교육희망 기관단체	교육일시	교육장소	인원
1	대구신용보증재단	6. 15.(수) 16:00 /2시간	기업성공지원센터 회의실	20명 정도
		6. 16.(목) 16:00 /2시간		20명 정도
2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	6. 16.(목) 16:00 /2시간	사회서비스원 교육장	30명 정도
3	해인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6. 17.(금) 13:00 /2시간	해인장애인보호작업장	45명 정도
4	강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6. 21.(화) 13:30 /2시간	강북장애인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실	30명 정도
5	대구평생학습진흥원	6. 27.(월) 09:30 /2시간	대구평생학습진흥원(1층)	20명 정도
6	대구여성가족재단	10. 4.(화) 10:00 /2시간	대회의실(1층)	30명 정도

※ 6월말 기준 찾아가는 인권교육 접수 현황

## 4

### 세계인권선언 기념 인권주간행사 개최

#### □ 추진근거

-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 행사 개요

- 행사기간 : 세계인권선언 기념일(12.10.) 전후 기간
- 행사내용 :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경상북도,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공동으로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기념행사 개최

### 《 세계인권선언 》

- ◆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열린 제3회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선언
- ◆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중심이지만 노동자의 단결권, 교육에 관한 권리, 예술을 향유할 권리 등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도 규정
- ※ 인권선언 기념일 : 매년 12월 10일

### □ 2021년 추진실적

구분	기간	장소	내용	인원	비고
인권홍보부스	12.2.(목) ~3.(금)	舊중앙 파출소 앞	· 온라인설문조사, 체험프로그램 인권 캠페인, 공모작 전시		대면
명사초청 인권특강	12.6.(월)	시청별관 대강당	· 다문화를 포용하는 사회(장한업)	298명	대면16명 비대면282명
	12.7.(화)		· 일상속 차별과 혐오의 씨앗들(오찬호)	334명	대면21명 비대면313명
인권영화제	12.7.(화)	CGV 대구한일	· 나는 보리	20명	대면
	12.8.(수)		· 메 기	25명	
	12.9.(목)		· 애비규환	22명	
인권공감토크	12.9.(목) 10:00	대구인권 교육센터	· 「인터넷상의 혐오와 차별」 문제진단 및 해법 논의	15명	대면
시민인권증진단 워크숍	12.9.(목) 15:00		· 시민인권증진단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	17명	대면

### □ 향후계획

- 기간/장소 : '22. 12월초 / 미정
- 행사내용 : 인권홍보부스, 인권문화행사(인권특강, 영화제, 토론회 등)
- 주 최 : 대구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유관기관



## 5

## 제2기 대구시민인권증진단 운영 및 제3기 구성

### □ 추진근거

-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 추진연혁

- 대구인권지킴이단(1기) 구성 및 운영 : '18. 9. 5. ~ '20. 9. 4.
- 인권시책 제도개선 계획 : '20. 10. 7.
  - ※ 인권문화 확산 등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대구시민인권증진단'으로 변경
- 대구시민인권증진단 양성 인권전문교육(총 10강좌) : '20. 11. 10. ~ 12. 29.

### □ 운영 개요

- 인 원 : 19명(5개 분야 : 여성·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노동)
  - ※ 활동분야 : 여성·청소년 4, 노인 4, 장애인 4, 이주민 4, 노동 3
- 임 기 : '21. 1. 1. ~ '22. 12. 31.(2년)
- 역 할 : 인권교육 참여·지원, 시책 홍보, 인권침해 사항 제보 및 인권시책 모니터링 등 대구시 인권증진 및 문화 확산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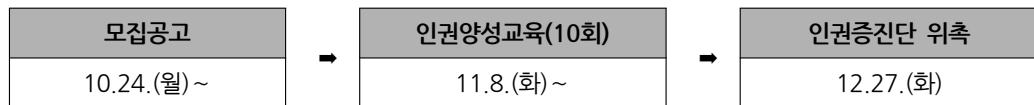
### □ 2021년 추진실적

- 공공기관 인권교육 모니터링 : '21. 10. ~ 12월 / 4회, 14명
- 역량강화 워크숍 : '21.12.9. / 17명 / 인권 특강, 조별 학습 및 발표

### □ 향후계획

- 생활속 인권시책 모니터링(자율 활동) : 5개조/ 반기별 활동결과지 제출

- 인권교육 모니터링, 인권캠페인 전개 : 연 중
- 간담회 및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특강, 인권로드 탐방 등) : 2회 정도
- 제3기 대구시민인권증진단 양성교육 : '22. 10.~12월
- 제3기 대구시민인권증진단 구성
  - 인원 : 20 ~ 30명(기존 희망 단원, 인권에 관심 있는 대구시민\*) \* 인권 양성전문교육 수료자
  - 임기 / 역할 : '23. 1. 1. ~ '24. 12. 31.(2년) / 인권시책 모니터링, 시책홍보 등
  - 추진절차



□ 추진과제 현황 : 4개 부문, 19개 이행과제, 76개 세부단위사업

(단위 : 백만원)

추진전략	부문	이행과제	단위사업		추진부서	예산액	
			총 계			1,895,417	
			소 계			443,144	
I.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	1. 장애인	1.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장벽 제거	1. 교통약자 이동편의 확대	저상버스 도입	버스운영과	2,749	
				나드리콜 운영	택시물류과	19,378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정보 서비스센터	200	
					2.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운영	장애인복지과	530
					3.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장애인복지과	346
					4. 장애인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장애인복지과	465
					5. 장애인체육 활성화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체육진흥과	4,821
					6.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설치·운영 및 건강검진기관 지정	건강증진과	666
					7. 장애인 건강주치의 및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실시	건강증진과	비예산
				2. 장애인 탈시설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1.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 지원	장애인복지과	2,489
					2.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 및 대상자 확대	장애인복지과	10,006
					3.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통한 자립지원	장애인복지과	29,758
					4. 대구광역시 탈 시설 지원센터 설치	장애인복지과	100
				2. 다문화 이주민	1. 다문화 이주민 지원체계 마련	1. 다문화 이주민지원 민관 거버넌스 구축	여성가족과
		2. 이주민 통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여성가족과			2,956	
		3. 이주민 쉼터 운영 지원	여성가족과			634	
		4. 이주민 통·번역 지원시스템 구축	여성가족과			481	

추진전략	부문	이행과제	단위사업	추진부서	예산액
I.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	3. 여성	1. 여성 인권증진 강화	1. 돌봄서비스 여성종사자 권리 확대	여성가족과	비예산
			2. 여성 폭력예방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활성화	여성가족과	4
			3.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 강화	여성가족과	-
			4. 출산친화적 환경조성 강화	출산보육과	42,195
			5. 미혼모·부 자립 지원	여성가족과	1,299
	4. 노동자	1. 차별과 고용불안 없는 노동환경 조성	1. 대구시와 산하 공사·공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자리노동정책과	비예산
			2. 비정규직 고용개선 사업	일자리노동정책과	230
			3. 단기근로청년 돌봄사업	청년정책과	100
		2. 노동자가 일하고싶은 고용환경 조성	1. 노동자 고용환경 개선	일자리노동정책과	130
			2. 고용친화대표기업 선정·지원	일자리노동정책과	900
	5. 노인	1. 노인의 걱정 없는 삶 보장	1. 노인 사회참여 및 일할 권리 확대	어르신복지과	113,757
			2. 복지 사각지대 노인 돌봄지원 강화	어르신복지과	39,617
			3.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	어르신복지과	29,647
			4. 노인 문화향유 기회 확대	어르신복지과	6,549
			5. 노인 학대 예방사업 강화	어르신복지과	1,063
	6. 아동·청소년	1.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조성	1. 공보육 인프라 구축	출산보육과	11,610
			2. 학대아동 권익보호 강화	청소년과	3,093
		2. 청소년 인권보장	1.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 지원	교육협력정책관	83,343
			2.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청소년과	3,198
			3. 국립 청소년치료재활센터 「디딤」 건립 지원	청소년과	-

추진전략	부문	이행과제	단위사업	추진부서	예산액	
I.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	7. 북한 이탈 주민	1. 북한이탈 주민	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자치행정과	329	
	8. 기타 사회적 약자	1. 사회적약자 인권증진	1. 문화소외 계층을 위한 문화나눔 강화	문화예술정책과	15,589	
			2. 도서관 확충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교육협력정책관	14,151	
			3. 소비자보호 및 권익증진	민생경제과	123	
			4. HIV/AIDS 감염인 의료 접근성 권리보장	감염병관리과	637	
			<b>소 계</b>		<b>1,161</b>	
II. 인권존중 지역문화 확산	1. 공직 사회	1. 인권친화적 공직환경 조성	1. 공무원 인권전문교육 프로그램 강화	자치행정과	12	
				공무원교육원	18	
			2. 장애인공무원 지속적 고용과 편의 지원	인사혁신과	-	
	2. 시민	1. 시민 인권감수성 향상	1. 시민 인권아카데미 운영	자치행정과	5	
			2. 학생 인권감수성 향상	자치행정과	3	
			3. 평생학습을 통한 시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증진	교육협력정책관	1,107	
			4. 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	가족센터	여성가족과	0
				노인복지시설	어르신복지과	2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과	비예산
	5. 인권존중 도시 만들기 인권주간 기념행사	자치행정과	12			
6. 함께하는 인권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인권역사 현장 탐방	자치행정과	2				

추진전략	부문	이행과제	단위사업		추진부서	예산액
Ⅲ. 인권도시 환경조성	1. 도시 환경	1.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	소 계			1,450,934
			1. 재난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밀착형 안전정책 구축	안심귀갓길 환경개선	안전정책관	110
				안전마을 만들기	안전정책관	-
				안심택배함 서비스	안전정책관	424
				화재취약지역 안전 인프라	안전정책관	-
				CCTV 관제요원 직무교육	사회재난과	4
				생활안전 CCTV 확충	사회재난과	3,584
				CCTV 관제시스템 고도화	사회재난과	-
			2.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	소방행정과	36,669	
			3. 취약계층 소방복지 서비스 강화	예방안전과	500	
			4. 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강화	복지정책과	396,272	
			5. 취약계층 지원 민관협력체계(달구벌복지기동대) 구축	희망복지과	643	
			6.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	보건의료정책과	692,204	
			7. 자살률을 현격하게 줄여가는 도시	건강증진과	2,231	
			8. 의료서비스 강화로 건강한 삶 보장	건강증진과	26,946	
				보건의료정책과	1,031	
			9. 시민이 체감하는 건강한 대기질 확보	기후대기과	58,807	
				환경정책과	비예산	
			10.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	환경정책과	1,014	
			2. 누구에게나 이동장벽 없는 도시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운영	교통정책과	1
				2.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교통정책과	5,059

추진전략	부문	이행과제	단위사업	추진부서	예산액
Ⅲ. 인권도시 환경조성	2. 주거	1. 주거권이 보장되는 도시	1. 취약계층 주거복지 활성화	건축주택과	224,855
			2. 상가임대차 애로상담실 운영	민생경제과	6
			3. 쪽방 생활인 주거지원 확대	복지정책과	574
			4. 정비사업 시 세입자 등 인권 보호	도시정비과	비예산
			소 계		178
Ⅳ. 인권보장 및 증진체계 구축	1. 인권 행정	1. 인권행정 체계 강화	1.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위원회 운영	자치행정과	6
			2. 대구광역시 인권센터 설치·운영	자치행정과	-
			3. 인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소통민원과	15
			4. 인권 실태조사 실시	자치행정과	70
			5. 인권 영향평가 실시	자치행정과	-
			6. 인권도시 대구만들기 시민인권증진단 운영	자치행정과	5
			7. 동반성장과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계약 활성화	회계과	비예산
			8.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총무과	10
			9. 개인정보 보호 인프라 정비	정보화담당관	57
	2. 지자체 간 네트 워크	1. 인권도시 네트워크 구축	1. 광역자치단체 인권협력 네트워크 구축	자치행정과	비예산
3. 인권 협력 체계 구축	1. 인권협력 체계구축	1. 민·관 인권 네트워크 구축 운영, 인권문화 확산	자치행정과	5	
		2. 시민인권보호관(인권옹부즈만) 독립성 확보 및 운영 활성화	감사관	10	

# 경상북도 인권보장체계





# 경상북도 인권

1. 경상북도 시군 인권조례 제정 현황
2.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
3. 2021~2025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4. 경상북도 인권사업 추진내용
5.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6. 도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개정(안)
7. 2022년 계획

## 1. 경상북도 시군 인권조례 제정 현황

### 경상북도 인권조례

- ▶ 제정일 : 2013. 11. 11(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 ▶ 내 용 : 인권 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인권센터 지정, 인권위원회 구성·운영

### 문경시 인권조례

- ▶ 제정일 : 2012. 9. 27 (소관부서 : 기획예산실)
- ▶ 내 용 : 인권 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인권지수 개발, 인권위원회 구성·운영

### 고령군 인권조례

- ▶ 제정일 : 2014. 12. 19 (소관부서 : 행정과)
- ▶ 내 용 : 인권 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인권지수 개발, 인권위원회 구성·운영

### 구미시 인권조례

- ▶ 제정일 : 2015. 1. 9 (소관부서 : 총무과)
- ▶ 내 용 : 인권 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인권지수 개발, 인권위원회 구성·운영

## 2.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

### ❖ 인권제도

-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13.11.11)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내 인권팀 신설(20.1월)
-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15명)

### ❖ 인권정책

- 21~25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 인권 실태조사 : 도민 1,003명, 공무원 505명
- 직원 인권교육, 인권경북 아카데미, 인권공모전

2013.11.11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1. 28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인권팀(3명) 신설
2020. 7. 10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구성(15명)
2020년	직원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인권주간행사(세계인권선언문 낭독, 인권영화제)
2021. 7.13	2021~2025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2021년	직원 인권교육, 인권경북 아카데미(5개 시군), 인권작품 공모전(22점)
2022년~현재	2022년 인권시행계획 수립, 인권위원회 정기회(22. 3)

## 3.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b>비전</b>	모두를 위한 인권 경북			
<b>정책목표</b>	전통중심 경북인권	지역중심 경북인권	약자중심 경북인권	시대중심 경북인권
<b>추진전략</b>	역사 및 전통문화와 접합된 인권	지역공동체를 되살리는 인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인권	뉴노멀 시대에 부합하는 인권
<b>핵심영역</b>	전통문화와 인권	인권규범 조성 인권인프라 구축 인권거버넌스 구축 인권문화 확산	장애인/노인 여성/아동청소년 이주민/비정규직 북한이탈주민 스포츠인 분야	안전권 정보인권

## 인권기본계획 수립 추진경과

일 정	추진내용
2020.7.10	착수보고회 개최
2020. 8. 7	설문지 타당검토 자문회의 개최, 설문조사 실시(8.31~9.20)
2020. 8.7~9.25	초점집단면접 실시(인권전문가, 인권활동가, 인권 당사자 등) 2020.8.7~9.25
2020. 11. 9	중간보고회 개최
2020.12. 2	인권시민단체 토론회 개최
2020. 12.2	인권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2021.2.1	인권기본계획 세부과제 담당자 간담회 개최

## 4. 경상북도 인권 사업(인권교육)

### 2020년 직원 인권교육

- 기간 : 2020. 8월~12월
- 인원 : 654명
- 방식 : 비대면 3회
- 내용 : 인권의 이해, 인권영화



### 2021년 직원 인권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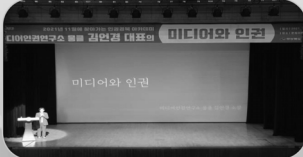
- 기간 : 2021. 6월~12월
- 인원 : 533명
- 방식 : 대면 5회, 비대면 1회
- 내용 : '지방정부, 인권을 품다' 인권특강



### 4. 인권 사업(인권아카데미, 인권공모전)

#### 2021년 인권아카데미

- 기간 : 2021. 11월 중 매주 1회
- 인원 : 282명
- 개최 : 고령,포항,울릉,문경,안동
- 내용 : 미디어와 인권 등



#### 2021년 인권공모전

- 기간 : 2021. 8월~12월
- 시상 : 최우수, 우수, 장려 22점
- 분야 : 캘리그래피,포스터(학생부, 일반부), 동영상



### 5.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 수립 : 2021. 8. 18.
- 대상 : 도 소속 직원
- 주요내용 : 조례 제정, 실태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 등

표	직원 모두 '존중 일터, 도인 모두 '행복 일터'				
주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보호관 운영으로 피해자 위스름 보호·지원.</li> <li>▶ 임종적 예방활동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가능성 최소화.</li> <li>▶ 재발 방지를 위한 가해자 개선 프로그램 운영.</li> <li>▶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시스템 체계적 추진.</li> </ul>				
예방 대응 단계	연자신고	상단조사	가해자 처벌 및 개선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주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li> <li>✓ 신고와 상담 지원</li> <li>✓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조사 실시</li> <li>✓ 인권보호관 신고 접수·조사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해자, 징계 조치</li> <li>✓ 가해자, 인사조치, 법적 조치</li> <li>✓ 가해자, 재발 내, 예방 교육 실시</li> <li>✓ 가해자, 법적 조치, 신고·고발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 상담·지원</li> <li>✓ 피해자, 법률지원</li> <li>✓ 피해자, 상담·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조례 제정</li> <li>✓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li> <li>✓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및 홍보 실시</li> <li>✓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실시</li> <li>✓ 상주·순회상담 운영</li> </ul>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일시 : 2021. 9. 6(월)
- 대상 : 5급 직원
- 주제 :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 행복과 존중 일터로







모두를 위한 인권경북  
감사합니다.

새바람 행복 경북!

경상북도

# 지역 인권보장체계 수립, 총체적 반성과 성찰의 토대에서 출발하자

서창호(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전 대구시 인권위원장)

## 1. 들어가며

지방분권의 진전은 민주주의의 발전 추세와 맞물려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제24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정부가 제안한 “지방 정부와 인권”결의 채택과 인권도시 운동과 같은 국제적 흐름과 다르지 않다. 또한 지난해 발의된 ‘인권정책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책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고, 지자체 인권기구 설치의 근거를 제공하며 지역의 인권화와 인권의 지역화 즉 지역의 인권제도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 2014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증진과 인권보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였는지 되돌아보았을 때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인권조례는 조례로서 제정되어 있으나,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증진과 인권보장의 근거로서 작용되지 못하고 행정의 알리바이로만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과연일까?

물론 인권기본조례의 제정과 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 등 양적인 측면에서는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지만, 인권기본조례와 인권기구(추진체계), 인권정책, 그리고 인권시민사회의 요구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집행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실효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인권보장체계 구성 또는 구축을 위한 워크숍은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본 발표를 통해 대구(경북)지역 인권제도화의 현황을 살펴보고, 민선 8기, 대구(경북) 행정과 인권 시민사회의 과제는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다.

## 2. 시도민의 인권증진과 보장을 위한 지역 인권보장체계의 의미

지역 인권보장체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지역 인권보장체제는 지역사회에서 ‘인권보장’이라는 사회의 기본적 책무에 대해, 지역사회의 행정과 의회 및 지역사회구성원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조직구성 및 운영 그리고 권한 부여 및 의사결정에 관한 총체적인 사회체제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인권보장체제를 통해 대구경북 시도민 및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나침반으로서 역할과 규정이라 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인권도시 구현을 위한 민관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인권보장의 방법이라 볼 수 있다. 즉 인권을 도시운영의 주요 가치로 삼는 가운데 각종 인권제도를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도시의 자원과 시민 역량을 결집시켜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도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태적 개념이 아니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구조적, 주체적 조건을 만들어가는 실천적 개념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인권 도시들의 발전의 근간에는 인권운동이 놓여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규범화, 제도화, 정책화, 문화화의 단계를 밟는다고 볼 수 있다.

## 3. 대구(경북) 인권 도시를 위한 행정의 현재

대구(경북) 인권 도시화의 조건과 과정은 각 분야에서의 인권운동이 활발하고 인권증진과 보장을 위한 지역 인권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발전 가능성 높은 토양이라 볼 수 있다.

대구경북의 인권 규범화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대구광역시 인권조례를 마련(2014년 5월 20일 제정, 2016년 12월 30일 1차 개정)하고,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시행 2020.11. 5)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조례에 기반하여 제도화의 기본이 되는 인권위원회, 인권옴부즈만 등을 설치하였으며, 정책적 측면에서는 2018년부터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2018~2022년)이 세워져 운용 중에 있으며,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2020~2025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권보호관	구분	서울		광주		대구		경북	
	명칭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옹부즈만		인권옹부즈만		-	
구성	8명(상임 2명, 비상임 6명)		7명(상임 1명, 비상임 6명)		1명(상임)		-		
운영방식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의결 방식		인권옹부즈만 협의제		사회복지시설 거주인 문제로 제한		-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	-	
상담건수	857	991	74	58			-	-	
신청건수	168	159	32	25	4 (접수)	2 (접수)	-	-	
시정권고	31	20	3	6	4 (수용)	2 (권고 및 대안)	-	-	
인권위원회	명칭	인권위원회		인권증진위원회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구성	15명(당연직 1명, 위촉직 14명)		20명(당연직 1명, 위촉직 19명)		15명(당연직 3명, 위촉직 12명)		15명(당연직 1명, 위촉직 14명)	
인권전담부서	구성	1명당관 4팀 17명		1과 3팀 16명		1팀 3명		1팀 3명	
	주요 업무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인권영향평가제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 수립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 수립	
		*공공기관 인권경영 추진		*인권정책 연석회의		*대구인권실태조사		*인권위원회 운영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인권옹부즈만 운영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운영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인권단체협력사업		*과거사 진실규명		*과거사 업무	
	*직원 인권교육		*인권교육		*공무원 및 민간단체 인권교육 및 지원		*인권교육 및 홍보		

▲서울/광주/대구/경북의 인권보호관, 인권위원회, 인권전담부서 현황

### 서울/ 광주/ 대구경북 인권행정 현황

(뉴스민, 성희롱 시정 조치와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의 차이)

위의 표를 보다시피 인권 기본조례제정도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대구와 경북은 기본 조례제정도 매우 더딜 뿐만 아니라 인권 행정을 위한 기반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 기본계획(2018년-2022년)”을 통해 인권 보장 및 인권증진의 비전 및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①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 ② 인권존중 지역문화 확산, ③ 인권도시 환경조성, ④ 인권보장 및 증진 체계 구축이라는 네 가지 추진전략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수립한 바 있다.

“인권증진의 제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권 준종의 당위성과 주요 행동강령과 인권실태 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인권센터 및 인권옹부즈만 운영 등 인권행정 체계를 강화하고,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시행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각종 시책의 추진과정에서 인권 가치가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인권 관련 현안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소통·상생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인권 관련 취약계층의 인권보장과 더불어 시민의 인권 의식을 강화하여 인권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인권 거버넌스 구축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 인권보장 및 증진 체계 구축

### 1 인권행정 체계 강화

-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위원회 운영
- 대구광역시 인권센터 설치·운영
  - (단기) 인권상담 창구(인권옴부즈만 연계)
  - (장기) 인권센터 설치 및 조직 구성
- 인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사각 지대 인권취약층, 마을번호사제
  - 찾아가는 시민사랑방과 연계
- 인권 실태조사 실시
  - 옴부즈만 활용한 설문조사, 2차 인권기본계획
- 인권 영향평가 실시
  - 사전계획 수립→ 시범 실시→ 전면 확대
- 시민이 함께 만드는 인권현장 마련
  - 대구시민 인권현장 제정 시민추진단 구성
- 시민인권 보호관 독립성 확보, 운영활성화
  - 시장 또는 부시장 직속, 합의회 가구화

### 2 인권기반 행정제도 운영

- 동반성장과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계약활성화
  - 여성, 장애인기업 수의계약 연차 확대와 가점
  - 지역영세기업 경쟁입찰 적격심사 시 우대
- 시민의 일자리 총족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 직원 교육, 사전정보 공표 목록 확대
  - 원문정보 공개를 제고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 개인정보 보호 인프라 정비
  -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정보보호 교육·홍보
- 인권정책 전담팀 신설
  - 시청 법무담당관(또는 감사관, 자치행정과) 내 인권정책팀 신설
  - 대구 인권센터 설립·운영 준비단 기능

33

###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 기본계획 중(2018년-2022년)

현재 대구광역시(경북)의 인권 행정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인권도시 이행을 위한 규범화 단계(1단계), 제도화 단계(2단계), 정책화(3단계), 문화화 단계(4단계)의 관점에서 나눌 수 있으며, 대구 경북의 이행단계별 평가를 통해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구분	규범화 단계 (1단계)	제도화 단계 (2단계)	정책화 단계 (3단계)	문화화 단계 (4단계)
대구 (경북)	인권조례	인권팀 인권위원회 인권옴부즈만 인권지킴이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2018-2022)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2020-2025) 대구시 인권의식 실태조사(2019)	
서울	인권조례 시행규칙	인권담당관(인권센터) 인권위원회 시민인권보호관 서울인권배심원	인권의식실태조사 인권정책 기본계획 인권영향평가 인권보고서	아동친화도시 참여적 인권예산 제정
광주	인권조례 시행규칙 인권도시 선언문 인권현장 인권도시이행원칙	인권위원회 인권옴부즈만 민주인권과 인권정책연석회의 인권정책 라운드테이블	인권의식실태조사 공무원인권의식실태조사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 인권영향평가 인권백서 인권지표 세계인권도시포럼	인권마을 만들기 인권거버넌스 참여적 인권예산 제정

구분	규범화 단계(1단계)	제도화 단계(2단계)	정책화 단계(3단계)	문화화 단계(4단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조례</li> <li>· 인권헌장(선언)</li> <li>· 인권강령 (지자체공무원)</li> <li>· 인권도시이행원칙</li> <li>· 인권도시 실행 가이드라인 (Implementation Guideline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담당관실 (전담부서)</li> <li>· 인권위원회</li> <li>· 지자체, 의회</li> <li>· 인권특별위원회 (상임or특별)</li> <li>· 인권옹부즈만(보호관)</li> <li>· 인권센터</li> <li>· 인권지킴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실태조사</li> <li>· 인권행동계획</li> <li>· 인권지표(인권지수)</li> <li>· 인권영향평가</li> <li>· 인권백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친화도시 (UNICEF)</li> <li>· 인권거버넌스</li> <li>· 인권마을 만들기</li> <li>· 인권지도 만들기</li> <li>· 참여적 인권예산 제정</li> </ul>
지역	규범화	제도화	정책화	문화화
서울				
광주				
대구 (경북)				

### 대구경북/ 서울/ 광주 인권도시 이행단계별 평가

위의 대구경북 인권 도시 이행단계별 평가를 통해 살펴본다면 현재 대구경북은 인권도시 제도화와 정책화의 중간 단계 초등 정도에 도달한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도, 정책, 문화는 반드시 선형적으로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며, 도시 성격에 따라 동시에 여러 단계가 작동하기도 하고, 역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도시 규범화 제도화와 정책화 그리고 문화화를 위한 대구경북의 행정의 노력은 고사하고 비판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대구경북 인권 행정의 현실이다.

## 4. 대구광역시, 인권 행정의 평가

### 1) 대구시 인권의식 실태조사, 대구시민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

<b>규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 개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도시 관련 규정 신설.</li> <li>- 인권옹부즈만 관련 별도 규정 마련: 현재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옹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옹부즈만 확대 설치.</li> <li>- 인권위원회 설치 의무 규정화: 현재 재량.</li> <li>- 인권교육의무 대상자 ‘지자체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확대 개정: 현재 소속 공무원에 한해 연 1회 이상.</li> <li>- 인권영향평가 규정 신설.</li> <li>- 인권보고서(백서) 규정 신설.</li> </ul> </li> </ul>
<b>제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 또는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b>인권센터</b>를 설치하여 인권행정의 전문성, 연속성, 책임성 담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연구의 대구시민 인권의식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에서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2순위로 고려해야 하는 정책에 대한 응답 중 <b>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및 기관 확대</b>(29.2%) 가장 높게 나타났음.</li> </ul> </li> <li>· 인권센터 내 인권옹부즈만(합의제) 설치: 현재 감사관소속으로. 복지옹부즈만과 함께 업무를 수행. 복지와 인권 성격이 다르므로 분리 필요.</li> </ul>
<b>정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의식 실태조사의 정례화와 해당 조사내용을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li> <li>· 인권영향평가 도입·시행.</li> <li>· 2년 주기로 <b>인권보고서(백서)</b> 발간: 인권정책사업 주기적 평가 및 진단 필요</li> <li>· 지자체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평가에 <b>인권 관련 관평가지표</b> 추가.</li> <li>· 인권지표(지수) 개발을 위한 연구 시행.</li> <li>· 다양한 분야/대상에 관한 세분화된 (정량/정성적) 인권실태조사 시행 필요 (eg. 공무원의식실태조사, 인권전문가/사회적소수자 관련 설문조사).</li> </ul>
<b>문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노력: 인권센터(가), 다수의 인권운동 시민사회단체, 인권팀,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등 대구시 내 인권정책행위자들 간 정책 라운드 테이블과 같은 형태의 상호협력과 시너지를 위한 협의체 필요.</li> </ul>

### 대구광역시 시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2019년 대구광역시 발주 : 경북대 사회과학연구원 육주원 교수)

## 2) 대구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공개모집에 즈음한 기자회견(2021. 08)

대구시에 묻는다! 대구시는 시민의 인권보장과 인권증진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있는가?

- 지난 2기 대구시 인권위원회 위촉직 민간 인권위원 전원 사퇴(2020. 12)를 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대구시가 입법예고한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일부 종교단체의 반대로 대구시는 개정안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이에 대구시 인권조례 개정안 자진 철회사태를 접한 대구시 2기 민간 인권위원은 반인권적 반민주적 행정에 심각한 문제를 느껴 전원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지난 대구시의 인권조례 개정안 철회사태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일부 종교단체의 힘의 논리에 의해 인권조례의 후퇴라 할 수 있으며, 대구시민의 존엄을 위협하고 삭세시키는 행위로 판단한다.
- 대구시의 수립한 인권기본계획안에는 인권행정 강화를 위해 인권센터 설치(2020년), 인권영향 평가 도입, 인권보호관을 시행한다는 계획이 있다. 이는 대구시가 인권기본계획의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9년에 실시한 '대구인권의식 실태조사'에서도 강조한 정책으로 인권기본계획 수립이후 지속적 개선,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구인권행정을 책임지는 인권팀장은 지난 3여 년간 5번이나 바뀌는 등 대구시는 인권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의지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 3) 2022년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 시행계획 평가안 중(대구시 평가)

- 2018년 인권팀 신설 등 그동안 인권행정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조직 및 제도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인권문화의 확산과 인권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인권기관단체와 연대협력할 수 있는 상시적 인권 네트워크가 필요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대면사업이 축소되고 비대면활동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언택트 시대에 맞는 인권 사각지대 해소 및 인권침해 구제방안에 대한 정책개발 및 시행이 필요

위의 평가처럼 인권행정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조직 및 제도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2019년 대구시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권고, 무엇보다도 대구시가 수립한 인권기본계획안(2018년~2022년)에는 인권행정 강화를 위해 인권센터 설치, 인권영향 평가 도입, 인권보호관을 시행을 위한 행정에 대한 집행 및 제도 기반을 위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제정된 인권조례는 유명무실한 상황에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장에서 대구광역시에는 조례는 제정되었지만, 의무 조항은 가급적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인권조례의 임의 조항에 그친 인권 증진의 당위는 지자체장의 의지나 관련 단체의 추가 활동이 없으면 그저 존재하기만 한다. 결과적으로 인권을 구체화하고 제도화하겠다는 애초의 취지와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다.

## 5. 인권 주류화를 실현하는 지역 인권보장체계의 과제

위에서 살펴보았지만 대구경북지역은 인권기본조례, 인권기본계획, 인권위원회 구성 등 형식적 측면에서 강조되었으며 이마저도 타시도에 비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행정에서 소극적이다 보니,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지역 인권보장체계의 구축과 점검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본래 의미의 인권행정을 본격화하기 위한 시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대구경북 민선 8기에는 10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정을 시작해야 한다. 최소한 17개 광역지자체보다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부끄럽게 뒤처지지는 않도록 대구경북 인권 행정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대구시를 비롯하여 인권시민사회가 함께 그동안 인권 행정에 대한 평가와 성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제대로 된 평가와 성찰이 선행되어야만 새롭게 지역 인권 거버넌스가 작동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지역 인권보장체계의 구축으로 나갈 수 있다. 즉 인권 행정이 무엇이 부족했으며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올바른 지역 인권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인권 거버넌스와 함께 하는 지역사회의 행정과 의회 및 지역사회구성원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조직구성 및 운영 그리고 권한 부여 및 의사결정에 관한 상호소통과 토론을 통해 하나하나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 과정이 생략된 채 진행되는 인권보장체계를 위한 노력은 또 다시 반복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인권 행정의 객관적인 평가가 기본적인 출발의 전제일 수밖에 없다.

둘째, 지자체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인권 각 시도별 기본조례가 제정되고 인권도시를 지향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전이 지속되면서 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 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성격도 매우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이며, 어떤 지자체 인권위원회는 시민사회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증진과 보장을 활동의 신뢰를 주면서 지자체 인권위원회에 대한 소통과 피드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인권위원회의 권한 강화가 더욱 지속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에 어떤 지자체 인권위원회는 지역 시민사회와 사회적 소수자의 유리 되어 형식적인 인권위원회로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 우선 대구경북 지자체 인권위원회는 지방행정에 대한 협력적 충고와 자문을 넘어 행정기관에 대한 인권적 감시기능, 즉 모니터링기구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다양한 인권분야를 대표하면서 그에 따른 전문역량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하는 것과 함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자체 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 인권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의 전환 또는 적어도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위한 모색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으로 당장에는 지자체 인권위원회가 심의자문기구로 남겨지더라도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①최소한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권고 기능은 반드시 추가되어야 한다. ②형식적으로 운영되며 알리바이 기구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에 대해 자문을 하고 지역의 인권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이를 위해서는 인권위원회에서 논의될 의제의 선정과 관련 정보의 제공이 중요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활동을 보조할 사무국의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 인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인권위원회가 중요하다는 것은 수많은 전문가가 여러 차례 강조했다. 제도의 보완을 통한 지자체 인권위원회의 권한 강화는 많은 논의와 도전을 통해 보완되어야 하며 이는 지역 인권 거버넌스를 통해 소통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본적인 인권부서를 갖추어야 한다.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도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람과 예산이다. ‘인권기본계획’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권전담 부서의 신설과 전문적인 역량의 강화가 중요하다. 이에 많은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권 전담부서로서 인권담당관실, 인권팀, 인권센터의 설치와 인권옹호관제도의 도입 등 지역의 실정에 맞는 조직을 신설·운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구경북 시도의 인권팀을 인권담당관실을 확대 재편과 한편으로 인권 전담부서로서의 인권센터를 개설하여 체계적인 인권행정과 인권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헌법과 국제법에 의거해서 부여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한 조직과 예산을 투여하지 않는 것은 시민들의 인권을 존중, 보호, 실현해야 할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는 인권 행정이 전시성 행정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진심을 보여 주길 기대한다.

넷째, 대구/경북 광역중심의 지역 인권보장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인권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다. 인권 관련 전문역량의 부족은 실제 인권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대구경북 광역중심의 지역 인권보장체제 수립의 기초를 설계하고 이에 따른 규정적이고 상설적인 논의 테이블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향후 인권정책기본법 시행에 따른 대구경북 행정의 적극적인 수렴이 필요하다. 만약 인권정책기본법이 시행된다면 정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수립 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 정부는 시행계획 등을 만들고, 추진성과에 따른 평가를 받게 된다. 지방정부가 인권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인권침해 사안에 자체 조사에 나설 수 있는 인권침해 조사 기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는 지방자치 분권의 흐름 안에서 지역 인권기구 설정과 맞물려 풀어야 하며 국가인권기구와 지역 인권 기구간의 협력적 체제가 더욱 필요한 지점이다.

## 6. 나가며

대구광역시의 경우 지자체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행정에서 논의하고 도전해온 지 8년이 넘게 흘렀다. 일부 단체장의 의지에 의존하여 인권 행정이 표류하거나 추진되는 악순환이 대구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모습을 띄고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단체장의 의지와 선의에 기반하여 인권행정을 펼쳐갈 수는 없다. 4년 주기로 바뀌는 정치지형에 인권행정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 독립성이 부여된 지역보장체계의 구축, 비판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인권시민사회가 있어야 인권 행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자체, 지자체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 그리고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인권시민사회를 포괄하는 새로운 지역 인권보장체제의 구상이 필요하다. 국가중심의 인권보장체제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상상으로 지역인권보장체계가 충분한 논의와 소통 그리고 행정에 피드백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인권 주류화를 실현하는 인권 도시운동을 열어가자





## 참조자료

1. 인권보장체계 구축 워크숍 주요 논의사항
2. 광역지자체 인권기본조례
3. 대구·경북 인권관련 자치법규 목록
4. 인권정책기본법안



[참조1]

## 인권보장체계 구축 워크숍 주요 논의사항

### □ 지역인권보장체계

- 지자체 내에 여러 가지 인권기구(지자체 인권위원회, 인권침해구제기구, 인권전담부서 등)들이 있는데 지역인권보장체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그 범주를 어디까지로 생각하시는지

### □ 지자체 인권위원회

- 지자체 인권위원회 성격을 자문기구(「지방자치법」 제130조)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합의제 행정기관(「지방자치법」 제129조)으로 볼 것인지

※ 「지방자치법」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⑤ 생략)

- 국가인권정책 및 관련 기본계획 수립체계 정비,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 기능의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인권정책기본법안」이 2021. 12. 28.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중임. 「인권정책기본법(안)」 제12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자체적인 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인권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 지방인권기구의 사무 범위 및 운영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해당 시행령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 「인권정책기본법(안)」 제12조(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한 인권침해 사안의 자체적인 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인권기구(이하 “지방인권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방인권기구가 그 사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인권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방법·절차, 시정권고와 공표의 방식 등에 관한 지방인권기구의 자문에 응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인권기구의 사무 범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자체적인 조사를 하여 권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인권침해 구제기구로서 지방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와의 조사 범위 등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 □ 인권정책 기본계획

- 일부 지자체에서는 형식적인 인권정책 기본계획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수립·이행·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방안은 무엇인지
- 「인권정책기본법(안)」 제7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역인권정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 지역인권정책계획과 관련하여 시행령에 포함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 ※ 「인권정책기본법(안)」 제7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도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인권정책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역인권기구 협력체계

- 지역인권기구가 지역 내 인권시민단체와의 협치 및 거버넌스 구조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 지역인권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 □ 인권기본조례

- 현행 지자체 인권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현재 대구는 복지 및 인권 옴부즈만 제도가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에 한정되어 있다는 평가가 있음. 이를 일반 인권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 경상북도 인권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인권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인권센터가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제8조), 경북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에 대한 심의기능만을 규정하고 있음(제10조). 인권침해 구제에 대한 바람직한 절차나 방법은 무엇인지

## □ 인권(정책)영향평가

- 일부 지자체(서울, 광주 등)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인권영향평가의 필요성과 방향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참조2]

## 광역시자체 인권기본조례

###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12. 30.] [대구광역시조례 제4924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의 인권정책 시행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소관 부서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 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시행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6조의2(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권보장 및 증진 실천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2(인권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침해 사례의 접수 및 상담 활동
2. 인권관련 교육 및 홍보
3. 인권보호 관련 자료의 개발과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요청한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인권센터는 해마다 전년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인권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연구기관 및 법조계 등에서 인권관련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관련 공무원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1. 5.] [경상북도조례 제4404호, 2020. 11.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도민”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도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접수되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 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도민의 협력)** 도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도의 인권정책 시행 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및 인권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8조(경상북도 인권센터의 지정)**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침해 사례 파악 등 관련 실태조사
2.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
3.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4. 인권지수 연구 및 개발 관련 사항
5.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6. 그 밖에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지정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 9. 19.>

④ 인권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경상북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업무)** ①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의2. 「경상북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심의사항<신설 2020. 11. 5.>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인권관련 단체·법인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또는 연구기관에서 인권관련 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힐 때
3. 품위손상, 비밀누설 및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때

**제13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의 정기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5조(관련기관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공무원 등 이 조례에 따른 관계자는 인권증진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3813호 2016.9.19)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404호, 2020. 11. 5.> (경상북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경상북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심의사항

[참조3]

## 대구·경북 인권관련 자치법규 목록

(2022. 5. 기준)

순번	법령명	제개정	공포일
1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16.12.30.
2	대구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19.11.11.
3	대구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17.9.29.
4	대구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19.10.10.
5	대구광역시 달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17.10.23.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19.10.10.
7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7.10.
8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17.6.30.
9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19.3.11.
10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21.11.1.
11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17.12.27.
12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18.12.20.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13.12.30.
14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13.4.1.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정	'19.10.10.
16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19.4.10.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정	'19.10.10.
18	대구광역시 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정	'21.7.12.
19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1.3.30.
20	대구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8.12.20.
21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2.4.11.
22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1.3.10.
23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12.31.



24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12.31.
25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1.3.30.
26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12.30.
27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1.2.22.
28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21.12.10.
29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22.2.28.
30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21.11.10.
31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15.10.30.
32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18.10.30.
33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17.5.10.
34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21.9.30.
35	대구광역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	제정	'20.12.10.

1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1.5.
2	구미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15.1.9.
3	고령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14.12.19.
4	문경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19.8.7.

5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18.11.1.
6	경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21.9.29.
7	안동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17.12.29.
8	영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19.3.11.
9	포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17.5.2.
10	경상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6.12.29.
11	경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8.2.23.
12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1.10.6.
13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1.2.9.
14	구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	'21.10.6.
15	경상북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11.5.
16	포항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21.8.3.

## [참조4]

# 인권정책기본법안

의안 번호	14195
----------	-------

제출연월일 : 2021. 12. 30.

제출자 : 정 부

## 제안이유

국가인권정책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인권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국제인권조약의 이행에 관하여 국제인권조약기구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체계화하고,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 이행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문화하는 등 국제인권규범을 반영한 인권정책이 수립·시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 1) 정부는 5년마다 인권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와 그 추진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인권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2)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에 앞서 국가인권정책에 관한 권고안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함.
- 3) 법무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송부한 권고안을 존중하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공청회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함.

나. 인권정책 추진실적 및 추진성과의 점검·평가(안 제8조 및 제9조)

법무부장관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소관 인권 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점검·평가하도록 하고, 국가인권정책 기본 계획이 종료되는 해에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포함한 5년 동안의 인권정책 추진 성과를 종합하여 평가하도록 함.

다.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설치(안 제11조)

- 1) 인권정책의 추진 방향 설정 등 국가의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함.
- 2) 국가인권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며, 위원은 인권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한 사람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도록 함.
- 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함.

라.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의 설치(안 제12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한 인권침해 사안의 자체적인 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

마. 국제인권조약기구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의 작성 등(안 제15조 및 제16조)

- 1)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의 이행에 관하여 국제인권조약기구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 등을 작성할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고서에 관하여 표명한 의견을 존중하도록 함.
- 2) 국가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주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보고서에 관한 국제 인권조약기구 등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심의 절차가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인권기구 등의 인권에 관한 권고를 이행하고, 이를 인권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바.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안 제17조)

기업은 기업활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에 관여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기업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가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실천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사. 인권교육의 실시와 지원(안 제19조 및 제20조)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인권침해나 부당한 처우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아. 인권의 날의 지정(안 제23조)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고 인권 보호·존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지정함.

## 인권정책 기본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인권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청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권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2장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국가인권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5년마다 국가인권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인권의 보호·증진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와 그 추진 방안
3.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와 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4.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 제16조에 따른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 이행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권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앞서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고안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송부된 권고안을 존중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공청회와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 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심의 전에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⑥ 법무부장관은 인권 상황의 반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요청을 받아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기본계획안의 확정 절차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인권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해당 연도의 연도별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연도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도별시행계획이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도별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도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인권정책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도별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① 법무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전년도 연도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기본계획이 종료되는 해는 제외한다)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할 때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를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에 따라 공개된 결과를 다음 연도의 연도별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도별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인권정책 추진성과의 평가)**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해에 기본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권정책 추진성과(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연도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포함한다)를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은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해에 지역계획에 따른 인권정책 추진성과를 종합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정책 추진성과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계획 수립 등을 위한 협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연도별 시행계획·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추진실적 점검·평가와 추진성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장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제11조(국가인권정책위원회)** ① 국가의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이하 “국가인권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가인권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인권정책의 추진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연도별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와 인권정책 추진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인권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5.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의 이행과 제15조에 따른 국가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인권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인권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를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국가인권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협의·조정하고 국가인권정책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정책위원회에 국가인권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인권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한 인권침해 사안의 자체적인 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인권기구(이하 “지방인권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방인권기구가 그 사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인권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방법·절차, 시정권고와 공표의 방식 등에 관한 지방인권기구의 자문에 응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인권기구의 사무 범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인권정책책임관의 지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은 소관 인권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인권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담당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인권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장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 이행

**제15조(국가보고서의 작성)** ①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의 이행에 관하여 국제인권조약기구에 제출하는 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1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보고서에 관하여 표명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주관하는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소관 인권정책 분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주관기관의 장은 국가보고서에 관한 국제인권조약기구 등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해당 심의 절차가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보고서의 작성과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 이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인권기구 등의 인권에 관한 권고를 이행하고, 이를 인권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인권기구 등의 인권에 관한 권고 이행, 권고 내용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장 기업과 인권

**제17조(기업의 인권존중책임)** ① 기업은 국내·국외에서의 기업활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3자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② 기업은 기업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 피해자가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고, 적절한 구제 수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기업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과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업이 제17조에 따른 인권존중책임(이하 “인권존중책임”이라 한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침·표준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1.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실천을 위한 세부 지침
2.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실천 관련 정보의 자율적 공개를 위한 표준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실천에 관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지침·표준 마련, 제3항에 따른 우수 사례 발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장 인권교육

**제19조(인권교육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의 기관, 단체 및 시설(이하 “인권교육의무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인권침해나 부당한 처우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5.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6.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구급·보호시설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8.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9. 그 밖에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단체 및 시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인권교육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내용,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인권교육을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인권교육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4.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5. 그 밖의 인권교육 관련 단체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의무기관의 장이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7장 보칙

**제21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정책의 개발·추진을 위하여 외국정부·국제기구나 관계 외국단체·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22조(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인권의 날)** ①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고, 인권 보호·존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인권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정부보고서”를 “국가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정부보고서”를 “국가보고서”로 한다.

---

## 대구·경북 인권보장체계 구축 워크숍

---

| 인 쇄 | 2022년 6월 29일  
| 발 행 | 2022년 6월 29일  
| 발행인 | 송두환(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 주 소 | (41939)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  
호수빌딩 15층  
| 전 화 | (053)212-7000  
| 웹사이트 |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디자인모장  
| 전 화 | (02) 2278-1990 | F A X | (02) 2278-1992

---

ISBN 978-89-6114-891-7 93350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작권산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 변경, 복제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41939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 (동인동2가 50-3번지) 호수빌딩 15층  
Tel : (053)212-7000, Fax : (053)212-7007

ISBN 978-89-6114-891-7 93350